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1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9. 9.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9. 9.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채진욱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동 조례 중 행정규제사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완화 및 삭제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수 있는 조명시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서 삭제(안 제5조제4호)
- 공중화장실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1회이상 도색토록 하는 유지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것으로 완화(안 제10조)
- 공중화장실에 관리대장 비치, 유지·관리 상황 등의 기록관리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완화(안 제11조)

- 유료화장실 승인 조항을 폐지(안 제16조 및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4호 중 에어타올기(또는 롤러타올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서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승인 조항을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중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는 관련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각각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1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안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추상적으로 쾌적한 환경관리를 하는데 지도관리에 불편하지 않을까?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월드컵경기와 관련하여 화장실 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려 함. 그러나 조도가 50룩스 이상이면 되고 100룩스로 하는 것과 에어타올기 설치의 과도함.
- 답변요지(조병하 생활복지국장) :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규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준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적으로

조도가 50룩스 이상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임.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승인 조항 폐지는 어디서 만든 것이며 유료화장실은 앞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인지?
- 답변요지(조병하 생활복지국장) : 서울시나 구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이나 현재까지 유료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없고 사문화된 것으로 폐지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내년에 아셈, 월드컵준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선진국형으로 골목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밖으로 내어 쾌적하고 깨끗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에어타월기나 롤러 타월기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데 완전히 삭제하는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예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월드컵관련 선진국형 공중화장실 건축 예정 설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답변요지(조병하 생활복지국장) : 성산2동에 설치할 예정인데 설계비용이 8,500만원이 드는데 시비 5,0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3,500만원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서 받은 시상금 1억5천만원에서 3,500만원을 보태어 건축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9. 9. 16. 한대운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관련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 제2호, 제3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조례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중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

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를 각각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1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9. 16.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관련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 제2호, 제3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중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를 각각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1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중 제2호, 제3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1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p> <p>1. (생략)</p> <p>2. <u>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u></p> <p>3. <u>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u></p> <p>4. - 11. (생략)</p> <p>12. <u>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u></p> <p>13. - 16. (생략)</p>	<p>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p> <p>1. - 16.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u></p> <p>3. <u>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u></p> <p>4. - 11. (개정안과 같음)</p> <p>12. <u>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u></p> <p>13. - 16.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출년월일 : 1999. 08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규제 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동조례중 행정규제사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완화 및 삭제하여 과다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 임.

2. 주요개정골자

가. 에어타월기(또는롤러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수 있는 조명시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서 삭제(안 제5조제4호)

나. 공중화장실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정비 하고 내·외부는 연1회이상 도색토록 하는 유지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것으로 완화(안 제10조)

다. 공중화장실에 관리대장 비치, 유지·관리 상황등의 기록관리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안 제11조)

라. 유료화장실 승인 조항을 폐지(안 제16조 및 제17조)

3. 개정근거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법률 제5864호)

제16조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1.25환경부령제61호)

제35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풀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을 “거울을 설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사용자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리대장 비치등)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을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2호 개별기준, 위반사항란중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제11조관련)

							공중화장실 명칭			
소재지	구	동	번지	호	정화조	대변기	소변기	비고		
구조	조식			대지 평(m')	인조 m'	남 ()	개			
	식건평			평(m')		여 ()				
설치년월일	년 월 일			전기시설		수도시설		장애인시설		
				내 등				유 무		
				외 등						
전경				부근약도						

현행	개정안
<p><u>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u></p> <p><u>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u></p> <p><u>2. 전담관리인을 둘 것</u></p> <p><u>3. 화장실,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u></p> <p><u>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 고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u></p> <p><u>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u></p> <p><u>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u></p> <p><u>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u>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u></p> <p>②~⑤(생략)</p> <p>[별표 제1호]</p> <p>과태료부과기준(제18조제2항관련)</p> <p>1.(생략)</p> <p>2. 개별기준</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u>이행하지 아니한</u>----- ----- ----- ----- -----</p> <p>②~⑤(현행과 같음)</p> <p>[별표 제1호]</p> <p>과태료부과기준(제18조제2항관련)</p> <p>1.(현행과 같음)</p> <p>2. 개별기준</p>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조항</th> <th colspan="3">부과금액</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5">1.~4.(생략)</td> </tr> <tr> <td>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td> <td>제17조(제2호내지 제4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4.(생략)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제2호내지 제4호)	20	30	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조항</th> <th colspan="3">부과금액</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5">1.~4.(현행과 같음)</td> </tr> <tr> <td colspan="5">(삭제)</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4.(현행과 같음)					(삭제)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4.(생략)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제2호내지 제4호)	20	30	50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4.(현행과 같음)																																					
(삭제)																																					